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2. 3.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0. 11. 18

다. 상정일자 :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10. 12. 3)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재한 지적과장 )

### 가. 제안이유

도로명 주소 안내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 지급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각 동의 주소지 관할 통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3. 검토보고의 요지 ( 이국환 전문위원 )

- 동 개정 조례안은 일반국민이 주소만으로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고, 2012.1.1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주민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변경된 주소 체계를 주소지 관할 통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하여 알리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을 통장에게 지급하고자 근거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